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제866호 2022. 7. 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 2022-77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006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거창군 공고 제2022-1008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진목1길 111 등 11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9-6 등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현재 공설공원묘지 내에 화장 유골은 봉안당에만 안치 가능하나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 유골을 봉안뿐 아니라 매장하여 평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함에 따라 이용 가능 장사시설을 “평장”을 포함하는 “분묘”로 개정하고 분묘의 형태 등 수시로 변경 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설공원묘지 이용 가능한 분묘 형태 확대함(안 별표 1)

1) 용어정비: 매장 ⇒ 분묘/ 매장, 평장 ⇒ 분묘

2) (현형) 봉분, 월평공설공원묘지만 평장 가능

⇒ (변경) 봉분, 모든 공설공원묘지 평장 가능

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등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5조제3항)

-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할 것을 권고함
- 2)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 모두 기재

4. 예고기간 : 2022. 7. 1.(금) ~ 7. 21.(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7. 21.(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행복나눔과)
- 2) 전화 055)940-3124, 팩스 055)940-3739, 이메일 hellomin2@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제5호를 제10호·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설공원묘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와 연장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p> <p>5.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p>	<p>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p> <p>5.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u>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p> <p>6.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u></p> <p>7.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8.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9.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u>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u></p> <p>10.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p> <p>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p>

현행	개정안
<p>②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와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가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와 같은 법정리일 경우 사용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별표 1]

공설공원묘지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면적(제곱미터)	장사시설 종류
계	8개소	95,279	
북상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 150	13,075	매장, 분묘
가조공설공원묘지	일부리 산 5	10,678	매장, 분묘, 봉안당
거창공설공원묘지	가지리 산 170	14,619	매장, 분묘, 봉안당
남상공설공원묘지	무촌리 산 253	12,817	매장, 분묘, 봉안당
가북공설공원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매장, 분묘, 봉안당
고제공설공원묘지	봉산리 1309	15,455	매장, 분묘, 봉안당
웅양공설공원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매장, 분묘, 자연장지
월평공설공원묘지	월평리 산 201	6,744	매장, 평장, 분묘, 봉안당

▷매장: 장사(葬事)의 방법 중의 하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분묘: 매장하는 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평장: 분묘의 형태 중의 하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8. 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7.>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공설 화장시설

- 가. 공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하여야 한다.
-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7호, 2022. 5. 9., 일부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를 말한다.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I. 정비필요성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II.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기타법령	의사상자법	○ 의사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사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조례에서 위임된 분묘의 형태 및 안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에 따른 분묘형태 및 안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6조)

1) 안치기준: (현행) 시신 ⇒ (추가) 화장한 유골

2) 분묘형태: (현행) 봉분 ⇒ (추가) 평장

나.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5조·제6조)

4. 예고기간 : 2022. 7. 1.(금) ~ 7. 21.(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7. 21.(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행복나눔과)
- 2) 전화 055)940-3124, 팩스 055)940-3739, 이메일 hellomin2@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을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국가·독립유공자확인증”을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 제5조제1항제4호”를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봉안시설은”을 “봉안당에는”으로 “매장시설에는 시신”을 “분묘에는 화장한 유골 또는 시신”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종전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는 봉분과 평장으로 한다.
- ② 분묘의 구조,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u>법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u></p> <p>제3조(사용료·관리비 감면 시 제출서류)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1. <u>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u>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증명서 2. <u>조례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에</u> 해당하는 사람: <u>국가·독립유공자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u> 3. <u>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u> 해당하는 사람: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p> <p>제5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원칙) ①~② (생략) ③ <u>조례 별표 1의 봉안시설은 화장한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매장시설에는 시신을 안치한다.</u></p>	<p>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장사 등에 관한 법률</u>」 제19조제2항과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p> <p>제3조(사용료·관리비 감면 시 제출서류)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증명서 2. <u>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u> 해당하는 사람: <u>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증,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u> 3. <u>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u> 해당하는 사람: 의사진단서로 장기기증사실을 확인하고, 확인 후 10일 이내에 장기기증확인증 제출</p> <p>제5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조례 별표 1의 봉안당에는 화장한유골만 안치해야 하고, 분묘에는 화장한유골 또는 시신을 안치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6조(분묘의 구조 등) <신 설></p> <p><u>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 구조,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봉분):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2. 비석: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3. 상석: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4. 비석의 표시: 일련번호, 매장하려는 시신의 성명과 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제6조(분묘의 구조 등) ① <u>조례 제8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는 봉분과 평장으로 한다.</u></p> <p>② <u>분묘의 구조, 석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봉분):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2. 비석: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3. 상석: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4. 비석의 표시: 일련번호, 매장하려는 시신의 성명과 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 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 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